

국가연구개발사업보안관리규정

제정 2009. 7. 1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본교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함에 따른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21)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수행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안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산학사업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1)

③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등급의 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보안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연구 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보안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연구보안심의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분류기준)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등급을 분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3. 외국의 기술이전의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5.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 공고하는 기술연구과제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기술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보호요건을 갖춘 다른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③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등급을 신청서 등의 표지 좌측 상단에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로 일반과제는 “일반과제”로 표시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군사보안업무시행규칙」에 따라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책임자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작성하고, 산학협력단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해당과제에 대해 연구보안심의회에서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안등급을 국가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보안심의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보안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급 변경)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역·변경사유 등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연구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 외에 제2호의 보안조치를 포함한다.

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나.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외국인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외국인이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 공간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동향 인지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바. 연구원에 대한 정기·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 연구원이 연구결과물 반출·대외제공·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아.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일반과제는 연구개발과제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연구자 보안)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는 과제협약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비지원기관에서 별도의 보안서약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신규 연구원의 보안서약서를 받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연구책임자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시건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보안과제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의 해킹 등의 보안을 위하여 자료의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시건장치가 설치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공간의 입구에 해당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자 외 출입금지”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사항) 연구책임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관리 요구사항 및 변동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현황 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연 1회(10월 중)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은 이를 종합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보안사고 발생 시 해당기관과 합동으로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 등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안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
2. 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는 자
3. 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자

제14조(보안책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는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